

Subject: Newsflash of HTW 3

제3차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이하 'HTW 3차')가 런던 IMO 본부에서 2016년 2월 1일에서 5일까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HTW 3차의 주요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표준훈련과정(Model Training Course)의 유효화(의제 3)

○ 사무국에서 개발 및 개정해야 할 모델코스의 우선순위 검토

- 제안된 모델코스 개발 및 개정 **우선순위 문서 승인**
-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운용 관련 모델코스를 HTW 4 차에 제출
- **Polar Water** 관련 **모델코스**에 대한 자발적인 개발 및 개정 참여를 독려

○ 케미컬 탱커 화물작업 향상 교육 모델코스 개정

- 총 60 시간의 교육 시간 중 이론 교육 39.5 시간, 실습 교육 20.5 시간 제안
- 쟁점 사항 없으며 **개정 완료** 됨

○ 운항급 레이더 항해 교육 모델코스 개정

- 레이더 및 알파 교육을 모두 포함하여 총 78 시간의 교육 시간을 제시하고 이론 교육 37.5 시간, 시연 교육 8.3 시간, 실습 교육 32.2 시간으로 제안
- 레이더, ECDIS, AIS 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발전된 부분을 모델코스에 반영하여 **개정 완료** 됨

○ 인명안전과 사회적 책임 교육 모델코스 개정

- 총 20 시간을 제시하고 Part C(Detailed teaching syllabus)와 Part D(Instructor manual)을 집중 점검하여 **개정 완료** 됨

○ 기관실 시뮬레이터 교육 모델코스 개정

- 총 80 시간을 제시, 상세 교육내용과 각 교육모듈의 시간을 변경
- High voltage(고전압)에 대한 해기 능력의 추가 및 어려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정 후 **HTW 제 4 차회의에 제출**하도록 함

○ 새로운 지침에 의한 모델코스 유효화 절차

- 다음의 모델코스에 대해서 MSC-MEPC.2/Circ.15 의 절차에 맞게 **HTW 제 4 차회의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통보
- 유인기관실 또는 정기적으로 무인기관실에서 당직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수 교육
 - 유인기관실에서 당직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무인기관실에서 당직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부원의 교육
 - 선원의 평가, 시험 및 증서 모델코스
 - 강사 교육 모델코스(Training course for Instructors)
 - 선상 평가 모델코스(On-board assessment)
 - IGF Code 의 적용 선박에 관한 기초 및 향상교육
 - 극지해역 선박운항을 위한 기초 및 향상교육
 - 갑판수 교육
 - 기관실 선원의 훈련 및 평가를 위한 기관실 시뮬레이션의 사용

2. 2010 마닐라 개정안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 개발 (의제 5)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GISIS 를 통해 전달되는 STCW 협약 제 4 조 정보의 전달, 제 8 조 완화증서, 제 9 조 동등조항 및 STCW 코드 제 A-I/7 조에 정보의 전달에 따른 보고 및 정보 전달 요건에 대한 상세, 보고시기, 정보형태 및 투명성을 검토하여 **부속서를 개발**

3.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검토 (의제 6)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개정을 위한 **검토범위 및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세부 검토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함

4. 인적요소의 역할 (의제 7)

제공된 최소 승무 기준과 선원의 피로에 대한 긴급한 논의 필요에 따라 선장/1등 항해사 2인 당직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 승무정원과 피로 문제의 연계에 대해서 그리스, 네덜란드등 여러 국가의 반대가 있었으며, **Principles of minimum safe manning(Res. A. 1047(27)의 현행유지를 전제로 논의함.** 특이 사항은 없음.

5. 피로에 관한 지침 개정(의제 8)

피로에 관한 지침의 개정안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상세 사항에 대한 논의

→ ICS 의 개정안 작성에 고려해야 할 원칙(HTW 3/8/2)과 미국이 제시한 모듈 2 대체(HTW 3/8/1)안을 통신작업반을 통한 논의 시 고려키로 하였으며 논의를 거쳐 **HTW 4 차 회의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함**

6. ISM Code 이행에 대한 지침 개정(의제 9)

기국에 의한 ISM 코드 이행을 위한 지침 개정하는 작업 진행

→ 중간 및 연차 심사를 심사원 자격을 위한 동행 교육의 범위에 포함

7. STCW 여객선 특별 안전훈련의 검토(의제 10)

여객선 특별 안전훈련 관련 STCW 협약 제 5장(특정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교육요건)을 개정하는 작업 진행

→ 훈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객선의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선박 친숙화 훈련에 추가하여 규정 V/2, 제 2 단락에 의거하여 비상 친숙화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정**

→ 비상시 영어를 사용한 안내와 관련하여 **여객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적인 영어 능력을 갖도록 결정**

→ **4 단계 여객선 특별 훈련**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여객선 비상 친숙화(모든 승무원)
- 군중관리 훈련
- 위기관리 인간행동 훈련
- 로로 여객선 훈련

※ MSC 96 차(2016 년) 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며 주요 회원국이 특별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한 **2017 년 12 월 1 일 수용될 예정**

8. SOLAS 제 2-1 장 및 여객선에 대한 손상관리훈련과 관련된 지침 개정안 검토(의제 11)

Ⅲ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여객선 손상관리훈련 주기의 적정성 논의

- 여객선 손상관리훈련의 주기를 최소 매 3 개월 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동 훈련을 손상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원으로 한정하도록 결정
- 손상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원이 당직 수행을 함에 따라 관련 훈련에 미 참가 가능성이 있으나 선원이 적절하게 훈련을 받는 것은 회사 책임임을 강조
- Ⅲ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후 SOLAS 개정안으로 발효 예정

9. MODU Code, LSA code 및 MSC.1/Circ.1206/Rev.1 검토(의제 15)

SSE 제 2 차 회의에서 개정된 MODU Code, LSA Code 및 MSC.1/Circ.1206/Rev.1 개정안에 대한 검토

- SSE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개정안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음

10. 선원 휴식시간 증명에 관한 항만국 통제관을 위한 지침(의제 18)

Ⅲ에서 작성한 선원 휴식시간에 대한 항만국 통제관을 위한 지침을 재검토

- 지침 본문에 대한 개정 완료 및 Ⅲ 송부 예정이며 부속서는 HTW 제 4 차 회의에서 논의 결정

※ 고려사항

○ 선주 및 운항 선사에 대하여

- 국제항해 여객선의 모든 종사자는 STCW 협약 제 5 장의 개정에 따라 일반 선박과는 다른 비상 친숙화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주지. 또한, 여객선 손상관리 훈련이 최소 매 3 개월마다 시행하도록 하는 SOLAS 제 2-1 장 및 여객선에 대한 손상관리훈련과 관련된 지침 개정안을 주지하여 동 훈련의 효과적인 이행 준비
- 이동식 해상구조물을 운항중인 선사는 향후 개정될 MODU Code, LSA Code 및 MSC.1/Circ.1206/Rev.1 의 개정안을 주지하고 효과적인 이행 준비

○ 교육기관에 대하여

- 개정된 **케미컬 탱커 화물작업 향상교육** 모델코스가 교육 내용에 반영되도록 주지
- 개정된 **운항급 레이더 항해 교육** 모델코스가 교육 내용에 반영되도록 주지
- 개정된 **인명안전과 사회적 책임 교육** 모델코스가 교육에 반영되도록 주지
- STCW 협약 제 5 장의 개정에 따라 추가된 **여객선 비상 친숙화 훈련을 교육 시스템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사항 주지

P.I.C:

Nam Dong-kuk / Deputy Senior surveyor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Tel: +82 70 8799 8331

Fax: +82 70 8799 8339

E-mail: convention@krs.co.kr



**General Manager of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